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질서 확립과 기관·단체의 상호협력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금천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당연직 위원 중 “구로소방서장”을 “금천소방서장”으로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4조제3항)
-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 중 성별 균형 비율 기준 추가(안 제4조제4항 신설)

- 협의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5조의2 신설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(안 제7조제1항)
-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(안 제8조제4호 신설)
- 수당 지급 대상 협의회 위원에 대한 범위 한정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바뀐 기관명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비율 기준 규정과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